

[계약자교부용]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고객 교부용 청약서 포함)

증권번호 제 100-000-2022 0103 5194 호

보험계약자	821009-1***** 김연철	피보험자	135-83-00482 경기도 용인시
보험가입금액	金 壹仟五百九拾六萬仟八百七拾 圓整 ₩15,961,870-	보험료	₩325,300-
보험기간	2022년 03월 10일부터 2024년 03월 09일까지 (731 일간)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동천동 541-2 (24세대) 담보기간 2022년 03월 10일부터 2024년 03월 09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22년03월10일 계약금액 ₩3,547,081,410- 보증금율 0.45%		
총영수보험료	₩325,300-	제3자납부액	
영수보험료	₩325,300-	제3자보험료	주민(사업자)번호: 성명(상호):
보험대리점명	덕수 (031-334-9400) 김종덕	* 보험증권 사서함 이용하시면 고객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서함번호 : 2022-0124 7075	
증권발급부서	용인지점 (031-337-0081) 박설아		
회사사업자번호	120-81-13002		

알아두셔야 할 사항

<p>[계약후 알릴의무] 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 3.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소멸시효]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보험료는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기 경과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15,000원]입니다.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분쟁의 조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	---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험료 영수증을 세법상 지출증빙 서류로 사용가능합니다.

면세업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유광현



[계약자교부용]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고객 교부용 청약서 포함)

증권번호 제 100-000-2022 0103 5198 호

보험계약자	821009-1***** 김연철	피보험자	135-83-00482 경기도 용인시
보험가입금액	금 四仟貳百五拾六萬四仟九百八拾 圓整 ₩42,564,980-	보험료	₩1,301,210-
보험기간	2022년 03월 10일부터 2025년 03월 09일까지 (1,096 일간)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동천동 541-2 (24세대) 담보기간: 2022년 03월 10일부터 2025년 03월 09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22년 03월 10일 계약금액: ₩3,547,081,410- 보증금율: 1.2%		
총영수보험료	₩1,301,210-	제3자납부액	
영수보험료	₩1,301,210-	제3자보험료	주인(사업자)번호: 성명(상호):
보험대리점명	덕수 (031-334-9400) 김종덕	* 보험증권사서함을 이용하시면 고객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권발급부서	용인지점 (031-337-0081) 박설아	* 사서함번호 : 2022-0124 7078	
회사사업자번호	120-81-13002		

알아두셔야 할 사항

<p>[계약후 알릴의무] 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p> <p>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 3.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p> <p>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p> <p>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④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소멸시효]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p>[보험료의 환급]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보험료는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15,000원]입니다.</p> <p>[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p> <p>[분쟁의 조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	--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험료 영수증을 세법상
지출증빙 서류로 사용가능합니다.

면세
사업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유광열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계약자교부용]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고객 교부용 청약서 포함)

증권번호 제 100-000-2022 0103 5203 호

보험계약자	821009-1***** 김연철	피보험자	135-83-00482 경기도 용인시
보험가입금액	金 貳仟六百六拾萬參仟百貳拾 圓整 ₩26,603,120-	보험료	₩1,355,420-
보험기간	2022년 03월 10일부터 2027년 03월 09일까지 (1,826 일간)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동천동 541-2 (24세대) 담보기간 2022년 03월 10일부터 2027년 03월 09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22년 03월 10일 계약금액 ₩3,547,081,410- 보증금율 0.75%		
총영수보험료	₩1,355,420-	제3자납부액	
영수보험료	₩1,355,420-	제3자보험료	주인(사업자)번호: 성명(성호):
보험대리점명	덕수 (031-334-9400) 김종덕	* 보험증권사서함을 이용하시면 고객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권발급부서	용인지점 (031-337-0081) 박설아	* 사서합번호 : 2022-0124 7082	
회사사업자번호	120-81-13002		

알아두셔야 할 사항

<p>[계약후 알릴의무] 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p> <p>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 3.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p> <p>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p> <p>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④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소멸시효]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p>[보험료의 환급]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보험료는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15,000원]입니다.</p> <p>[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p> <p>[분쟁의 조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징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	---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험료 영수증을 세법상 지출증빙 서류로 사용가능합니다.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삼육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유광열



[계약자교부용]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고객 교부용 청약서 포함)

증권번호 제 100-000-2022 0103 5205 호

보험계약자	821009-1***** 김연철	피보험자	135-83-00482 경기도 용인시
보험가입금액	금 貳仟百貳拾八萬貳仟四百九拾 元整 ₩21,282,490-	보험료	₩2,168,680-
보험기간	2022년 03월 10일부터 2032년 03월 09일까지 (3,653 일간)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보증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담보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보증금율	용인 수지구 동천동 541-2 (24세대) 2022년 03월 10일부터 2032년 03월 09일까지 2022년03월10일 ₩3,547,081,410- 0.6%		
총영수보험료	₩2,168,680-	제3자납부액	
영수보험료	₩2,168,680-	제3자보험료	주민(사업자)번호: 성명(상호):
보험대리점명	덕수 (031-334-9400) 김종덕	* 보험증권 사서함을 이용하시면 고객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서함번호 : 2022-0124 7086	
증권발급부서	용인지점 (031-337-0081) 박설아		
회사사업자번호	120-81-13002		

알아두셔야 할 사항

<p>[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p> <p>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p> <p>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p> <p>3. 주계약 또는 범형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p> <p>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p> <p>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범형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④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소멸시효]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p>[보험료의 환급]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보험료는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15,000원]입니다.</p> <p>[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p> <p>[분쟁의 조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	---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험료 영수증을 세법상
지출증빙 서류로 사용가능합니다.

면세
사업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유광열

